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47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박정하·조지연·강대식

이인선 · 김형동 · 장동혁

김장겸 • 진종오 • 서범수

배준영 • 신동욱 • 김위상

김용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 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제33조에 따른다.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